공공지원민간임대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임차인모집공고(정정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공동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www.ecodesian15.com) 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공동주택 홈페이지(http://www.ecodesian15.com)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본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청약신청일에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본인명의 핸드폰 지참필수)
– 당첨자 발표 이후(예비당첨자 제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당첨자 외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홈페이지(http://www.ecodesian15.com)에서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당첨자 제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추후 유선상으로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공지해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되더라도 발열, 기침 등이 있을 경우 강제 퇴거조치될 수 있습니다.

3. 사전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입장 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시 관람이 제한됨)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등)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방명록 작성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병행으로(☎063-255-8383) 실시할 예정이오니, 간혹 폭주하는 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은 (주)에코시티개발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주)에코시티개발'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사용승인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합니다.
• 향후 PF대출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당해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시행규칙 14조의11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존주거주택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일은 2021.10.29.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거주지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한하며 외국인 및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별도의 자산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1 규정에 의거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거주자만 청약 가능하며, 청약 경쟁 시 전주시 거주자에게 '선순위'로 우선공급하며, 그 외 전라북도 거주자에게 '후순위'로 공급합니다.
가. 특별공급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1 규정에 의거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선순위) 및 전라북도(후순위)에 거주중인 만19세 이상 전주시(선순위) 및 전라북도(후순위)에 거주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①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고령자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1 규정에 의거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선순위) 및 전라북도(후순위)에 거주중인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이 주택의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추첨방식에 의해 진행합니다.
일반공급(594세대)은 총 세대수(748세대)에서 특별공급(154세대)을 제외하고 공급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며, 일반공급세대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접수 미달 후 발생하는 미계약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인허가청의 협의를 통하여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3을 준용하여, 임대차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시에는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고령자 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소득 요건 기준을 30퍼센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모집공고일[2021.10.29.]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어야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복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13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에 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임대차계약(변경)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시 점검 결과 중복 입주 또는 계약 된 경우 기한 내 별도의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주택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이후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분양전환을 진행할 시 분양전환 예정일 현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며, 분양가는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감정평가 금액내에서 입주자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단, 관계법령상 임대기간 및 분양전환, 분양금액 등에 대한 법령이 재개정될시 해당법령을 따르기로 합니다.)
• 이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홍보관 개관은 2021.10.29.(금) 10:00부터이고, 청약신청은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홈페이지(http://www.ecodesian15.com)에서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셔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전용 84A, 140A 타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안내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계획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임차인모집공고문은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홈페이지(http://www.ecodesian15.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중 200만원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Ⅰ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청 건축과-44462(2021.10.26.)로 임차인모집공고 신고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293-96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 지하2층, 지상29층 5개동 총 7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전용면적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일반공급	계	입주예정
64.9436	64A	64.9436	21.5347	86.4783	46.5098	132.9881				46	46	2024년 4월
64.9667	64B	64.9667	21.6282	86.5949	46.5265	133.1214		55	30		85	
64.6665	64C	64.6665	21.3733	86.0398	46.3113	132.3511	47				47	
84.9168	84A	84.9168	27.5643	112.4811	60.8138	173.2949				58	58	
84.9168	84A1	84.9168	27.5643	112.4811	60.8138	173.2949				56	56	
84.9896	84B	84.9896	27.6919	112.6815	60.8660	173.5475		22		36	58	
84.9034	84C	84.9034	27.2394	112.1428	60.8043	172.9471				144	144	
104.5724	104A	104.5724	32.6377	137.2101	74.8905	212.1006				142	142	
140.9927	140A	140.9927	43.4271	184.4198	100.9732	285.3930				56	56	
140.6451	140B	140.6451	43.9370	184.5821	100.7243	285.3064				56	56	
합 계							47	77	30	594	74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1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 거주하는자만 청약가능하며, 청약 경쟁 시 전주시 거주자에게 '선순위'로 우선공급하며, 그 외 전라북도 거주자에게 '후순위'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에코시티 데시앙15블록 홈페이지(http://www.ecodesian15.com)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타입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청약신청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 · 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및 기간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구 분	주거 전용면적별 타입 표기 방식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64.9436㎡	64.9667㎡	64.6665㎡	84.9168㎡	84.9168㎡	84.9896㎡	84.9034㎡	104.5724㎡	140.9927㎡	140.6451㎡
타입	64A형	64B형	64C형	84A형	84A1형	84B형	84C형	104A형	140A형	140B형

• 타입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안내 및 홍보관 및 공급안내문의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A, A1, B, C 타입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타입은 홍보관 및 홈페이지(http://www.ecodesian15.com) 등에서 도면을 직접 확인하시기바랍니다.

Ⅱ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차 계약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타입	공급유형	동 · 호 구분	세대수	층	총액	계약금(10%) 계약 체결시	중도금 1차(10%) 2022.02.23.	2차(10%) 2022.07.25.	3차(10%) 2023.03.23.	4차(10%) 2023.07.24.	5차(9%) 2023.11.23.	잔금(41%) 입주시	월임대료
64A	일반공급	1504동 2라인 1505동 2라인	46	2층	141,730,000	14,173,000	14,173,000	14,173,000	14,173,000	14,173,000	12,755,000	58,110,000	215,000
				3층	146,860,000	14,686,000	14,686,000	14,686,000	14,686,000	14,686,000	13,217,000	60,213,000	215,000
				4층	152,080,000	15,208,000	15,208,000	15,208,000	15,208,000	15,208,000	13,687,000	62,353,000	215,000
				5층이상	156,120,000	15,612,000	15,612,000	15,612,000	15,612,000	15,612,000	14,050,000	64,010,000	215,000
64B	특별공급	1501동 2라인 1504동 4라인 1505동 4라인	85	1층	122,980,000	12,298,000	12,298,000	12,298,000	12,298,000	12,298,000	11,068,000	50,422,000	193,000
				2층	127,550,000	12,755,000	12,755,000	12,755,000	12,755,000	12,755,000	11,479,000	52,296,000	193,000
				3층	132,170,000	13,217,000	13,217,000	13,217,000	13,217,000	13,217,000	11,895,000	54,190,000	193,000
				4층	136,870,000	13,687,000	13,687,000	13,687,000	13,687,000	13,687,000	12,318,000	56,117,000	193,000
				5층이상	140,510,000	14,051,000	14,051,000	14,051,000	14,051,000	14,051,000	12,645,000	57,610,000	193,000
64C	특별공급	1504동 1라인 1505동 1라인	47	1층	122,980,000	12,298,000	12,298,000	12,298,000	12,298,000	12,298,000	11,068,000	50,422,000	193,000
				2층	127,550,000	12,755,000	12,755,000	12,755,000	12,755,000	12,755,000	11,479,000	52,296,000	193,000
				3층	132,170,000	13,217,000	13,217,000	13,217,000	13,217,000	13,217,000	11,895,000	54,190,000	193,000
				4층	136,870,000	13,687,000	13,687,000	13,687,000	13,687,000	13,687,000	12,318,000	56,117,000	193,000
				5층이상	140,510,000	14,051,000	14,051,000	14,051,000	14,051,000	14,051,000	12,645,000	57,610,000	193,000
84A	일반공급	1502동 3라인 1503동 3라인	58	1층	178,690,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6,082,000	73,263,000	281,000
				2층	185,330,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6,679,000	75,986,000	281,000
				3층	192,040,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7,283,000	78,737,000	281,000
				4층	198,870,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7,898,000	81,537,000	281,000
				5층이상	204,150,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18,373,000	83,702,000	281,000
84A1	일반공급	1504동 3라인 1505동 3라인	56	1층	178,690,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6,082,000	73,263,000	281,000
				2층	185,330,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6,679,000	75,986,000	281,000
				3층	192,040,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7,283,000	78,737,000	281,000
				4층	198,870,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7,898,000	81,537,000	281,000
				5층이상	204,150,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18,373,000	83,702,000	281,000
84B	특별공급	1503동 2라인 (1층~22층)	22	1층	160,820,000	16,082,000	16,082,000	16,082,000	16,082,000	16,082,000	14,473,000	65,937,000	253,000
				2층	166,800,000	16,680,000	16,680,000	16,680,000	16,680,000	16,680,000	15,012,000	68,388,000	253,000
				3층	172,830,000	17,283,000	17,283,000	17,283,000	17,283,000	17,283,000	15,554,000	70,861,000	253,000
				4층	178,980,000	17,898,000	17,898,000	17,898,000	17,898,000	17,898,000	16,108,000	73,382,000	253,000
				5층이상	183,740,000	18,374,000	18,374,000	18,374,000	18,374,000	18,374,000	16,536,000	75,334,000	253,000
	일반공급	1502동 2라인 1503동 2라인 (23층~29층)	36	1층	178,690,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6,082,000	73,263,000	281,000
				2층	185,330,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6,679,000	75,986,000	281,000
				3층	192,040,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7,283,000	78,737,000	281,000
				4층	198,870,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7,898,000	81,537,000	281,000
				5층이상	204,150,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18,373,000	83,702,000	281,000
84C	일반공급	1501동 5라인 1502동 5라인 1503동 5라인 1504동 6라인 1505동 6라인	144	1층	178,690,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7,869,000	16,082,000	73,263,000	281,000
				2층	185,330,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8,533,000	16,679,000	75,986,000	281,000
				3층	192,040,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9,204,000	17,283,000	78,737,000	281,000
				4층	198,870,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9,887,000	17,898,000	81,537,000	281,000
				5층이상	204,150,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20,415,000	18,373,000	83,702,000	281,000
104A	일반공급	1501동 1,3,4라인 1502동 4라인 1503동 4라인	142	1층	215,470,000	21,547,000	21,547,000	21,547,000	21,547,000	21,547,000	19,392,000	88,343,000	339,000
				2층	223,490,000	22,349,000	22,349,000	22,349,000	22,349,000	22,349,000	20,114,000	91,631,000	339,000
				3층	231,570,000	23,157,000	23,157,000	23,157,000	23,157,000	23,157,000	20,841,000	94,944,000	339,000
				4층	239,810,000	23,981,000	23,981,000	23,981,000	23,981,000	23,981,000	21,582,000	98,323,000	339,000
				5층이상	246,180,000	24,618,000	24,618,000	24,618,000	24,618,000	24,618,000	22,156,000	100,934,000	339,000
140A	일반공급	1504동 5라인 1505동 5라인	56	2층	299,80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26,982,000	122,918,000	455,000
				3층	310,650,000	31,065,000	31,065,000	31,065,000	31,065,000	31,065,000	27,958,000	127,367,000	455,000
				4층	321,70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28,953,000	131,897,000	455,000
				5층이상	330,240,000	33,024,000	33,024,000	33,024,000	33,024,000	33,024,000	29,721,000	135,399,000	455,000
140B	일반공급	1502동 1라인 1503동 1라인	56	2층	299,80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26,982,000	122,918,000	455,000
				3층	310,650,000	31,065,000	31,065,000	31,065,000	31,065,000	31,065,000	27,958,000	127,367,000	455,000
				4층	321,70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28,953,000	131,897,000	455,000
				5층이상	330,240,000	33,024,000	33,024,000	33,024,000	33,024,000	33,024,000	29,721,000	135,399,000	455,00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별표2 규정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하여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2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유효합니다.
(단, 공실 발생으로 임차인 변경시 신규 임차인의 임대조건은 현 계약시점까지의 누적인상률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은 발코니 확장 시공으로 공급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선순위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고, 전체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75퍼센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용검사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 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후 주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 선택안내
• 최초 계약시 선택한 임대조건(표준형, 선택형1)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선택형)

타입	공급유형	세대수	층	표준형 보증금	표준형 월임대료	선택형1 보증금	선택형1 월임대료
64A	일반공급	46	2층	141,730,000	215,000	132,280,000	258,000
			3층	146,860,000	215,000	137,070,000	258,000
			4층	152,080,000	215,000	141,940,000	258,000
			5층이상	156,120,000	215,000	145,710,000	258,000
64B	특별공급	85	1층	122,980,000	193,000	114,780,000	232,000
			2층	127,550,000	193,000	119,050,000	232,000
			3층	132,170,000	193,000	123,360,000	232,000
			4층	136,870,000	193,000	127,750,000	232,000
			5층이상	140,510,000	193,000	131,140,000	232,000
64C	특별공급	47	1층	122,980,000	193,000	114,780,000	232,000
			2층	127,550,000	193,000	119,050,000	232,000
			3층	132,170,000	193,000	123,360,000	232,000
			4층	136,870,000	193,000	127,750,000	232,000
			5층이상	140,510,000	193,000	131,140,000	232,000
84A	일반공급	58	1층	178,690,000	281,000	166,770,000	337,000
			2층	185,330,000	281,000	172,980,000	337,000
			3층	192,040,000	281,000	179,230,000	337,000
			4층	198,870,000	281,000	185,610,000	337,000
			5층이상	204,150,000	281,000	190,540,000	337,000
84A1	일반공급	56	1층	178,690,000	281,000	166,770,000	337,000
			2층	185,330,000	281,000	172,980,000	337,000
			3층	192,040,000	281,000	179,230,000	337,000
			4층	198,870,000	281,000	185,610,000	337,000
			5층이상	204,150,000	281,000	190,540,000	337,000
84B	특별공급	22	1층	160,820,000	253,000	150,090,000	303,000
			2층	166,800,000	253,000	155,680,000	303,000
			3층	172,830,000	253,000	161,310,000	303,000
			4층	178,980,000	253,000	167,050,000	303,000
			5층이상	183,740,000	253,000	171,490,000	303,000
	일반공급	36	1층	178,690,000	281,000	166,770,000	337,000
			2층	185,330,000	281,000	172,980,000	337,000
			3층	192,040,000	281,000	179,230,000	337,000
			4층	198,870,000	281,000	185,610,000	337,000
			5층이상	204,150,000	281,000	190,540,000	337,000
84C	일반공급	144	1층	178,690,000	281,000	166,770,000	337,000
			2층	185,330,000	281,000	172,980,000	337,000
			3층	192,040,000	281,000	179,230,000	337,000
			4층	198,870,000	281,000	185,610,000	337,000
			5층이상	204,150,000	281,000	190,540,000	337,000
104A	일반공급	142	1층	215,470,000	339,000	201,110,000	406,000
			2층	223,490,000	339,000	208,590,000	406,000
			3층	231,570,000	339,000	216,140,000	406,000
			4층	239,810,000	339,000	223,830,000	406,000
			5층이상	246,180,000	339,000	229,770,000	406,000
140A	일반공급	56	2층	299,800,000	455,000	279,820,000	545,000
			3층	310,650,000	455,000	289,940,000	545,000
			4층	321,700,000	455,000	300,260,000	545,000
			5층이상	330,240,000	455,000	308,240,000	545,000
140B	일반공급	56	2층	299,800,000	455,000	279,820,000	545,000
			3층	310,650,000	455,000	289,940,000	545,000
			4층	321,700,000	455,000	300,260,000	545,000
			5층이상	330,240,000	455,000	308,240,000	545,000

Ⅲ 신청자격, 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명의 청약신청은 불가)

모집분야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10.29.]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연령 :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청약자 및 청약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합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 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청약 경쟁 시, 전주시 거주자에게 '선순위'로 우선공급하며, 그 외 전라북도 거주자에게 '후순위'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서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시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15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15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10.29.]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고령자	•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10.29.]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사람 가. 연령 : 만65세 이상인 사람(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2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2021.10.29.(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구성원(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은 반드시 64B, 64C, 84B 타입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하오니 청약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공급 항목별(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소득 기준 산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110% 이하	3,290,794	5,018,789	6,864,572	7,803,626	7,803,626	8,133,012	8,555,826	8,978,639
120% 이하	3,589,957	5,475,042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자(만19세이상)의 합산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추첨방식에 의해 진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개시일 이후 특별공급 중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분에 대한 잔여물량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공급분이(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에코시티 데시앙15블록 홈페이지 (http://www.ecodesian15.com)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명의 청약신청은 불가함)

구 분	자격요건
일반공급	**• 임차인모집공고일[2021.10.29.(금)]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경쟁 시, 전주시 거주자에게 '선순위'로 우선공급하며, 그 외 전라북도 거주자에게 '후순위'로 공급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 무효처리하며 부적격처리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 • 본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및 소득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함.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충족 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구 분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 사업주체에서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 예비당첨자는 공급세대수의 5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당첨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 및 순번을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을 대상으로 사업주체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청약 신청 안내
◎ 에코시티 데시앙 홈페이지 (http://www.ecodesian15.com) 접속 → 청약신청 바로가기(팝업) 클릭

1. 홈페이지 접속 (청약신청 바로가기 팝업클릭)
2. 청약신청 클릭
3.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보증금확인)
4. 휴대폰 본인 인증 (본인인증 정보입력→인증번호 수신 및 입력)
5. 청약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등)
6. 청약정보입력 (청약순위, 유형 등 선택)
7. 청약타입 등 선택
8. 청약내용 확인 및 접수
9. 청약완료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2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 접수시간 17시는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시가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의 수정은 불가하며, 취소는 "21.11.04(목) 09시 ~ 21.11.05(금) 17시"까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의 기재사항이 오류가 있을시 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 이 주택은 청약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업주체에서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임차인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ecodesian15.com)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인모집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일반공급 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인모집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정보취약계층(노약자,장애인 등) 홍보관 방문청약 안내사항

구 분	청약신청	신청장소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2021.11.04.(목) ~ 21.11.05.(금) [10:00 ~ 15: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6-2번지, 15BL 견본주택

■ 정보취약계층 방문청약 신청 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 특별/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시 (청약자 본인명의 핸드폰 지참필수-본인인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1.10.29)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정보취약계층 방문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 모집공고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시 홍보관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청약신청을 도와드리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판정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8.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Ⅳ 공급일정

■ 청약 및 계약일정

구 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계약일자
특별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및 일반공급	2021.11.04. (목) 09:00 ~ 2021.11.05. (금) 17:00	• 당사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http://www.ecodesian15.com ※정보취약계층은 홍보관에서 인터넷접수를 도와드립니다.	2021.11.07.(일) 10:00 http://www.ecodesian15.com	2021.11.23. (화)~2021.11.29. (월) (10:00 ~ 16:00)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않습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ecodesian15.com)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Ⅴ 계약체결

■ 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일정	장 소
구비서류 제출	정당당첨자	2021.11.08.(월) ~ 2021.11.13.(토) (10:00 ~ 16:00) (6일간)	15BL 견본주택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6-2번지
당첨자 계약체결		2021.11.23.(화) ~ 2021.11.29.(월) (10:00 ~ 16:00) (7일간)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사항 소명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내에 서류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청약통장사용 및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않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 제출시 대리 신청 불가
			○		3.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		4.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5.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6.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7.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8.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공급 유형별	공통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홍보관 비치
				○	3.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홍보관 비치)
	청년		○		1.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시, "상세"로 발급
			○		2.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원 소득이 있을 경우
			○		3.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		1.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시, "상세"로 발급
			○		2.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		1. 혼인 확인서류	본인	• 서약서(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예비배우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 "상세"발급
			○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 예비배우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혼인 후 구성될 만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고령자		○		1.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제 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 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1.10.29.)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직계존 · 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홍보관 비치)	– 접수장소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 고
임대보증금	국민은행	763201-01-675738	(주)에코시티개발	※ 입금예시 1501동101호 홍길동 –) 15010101홍길동

※ 상기 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임대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납입을 위한 금융기관(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납부조건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불가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어떠한 제한에도 임대보증금을 임차인 본인 책임하에 납부하여야합니다.
• 임차인은 개별 대출 실행 시 그에 대한 이자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임차인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사와 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개별 대출 시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대출비율 축소 또는 불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로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집단대출 알선을 진행할 경우에도 대출 여부 및 대출비율 등은 개개인마다 다를수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조건이며,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임대사업자가 대납(후불제)하고, 입주 시 대납한 이자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지연 시 그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집단대출 알선을 진행할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전에 계약이 해지 및 해제될 시 해지위약금(200만원)과 별개로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사업자가 대납한 중도금 이자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하며, 이는 기납부한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하고,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와 계약자(청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임대보증금을 해당 납부일에 무통장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은 중도금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15010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증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않습니다.

■ 월임대료 납부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입주 전 별도로 고지할 계획입니다.
• 당월 분 임대료(당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의 임대료를 말한다) 납기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납기일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 고지 및 공고문 등 안내 예정). 단, 임대료 계산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열쇠 교부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산정한다.

Ⅵ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확장 및 유의사항
• 당해 주택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되며,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주택형 (㎡)	구 분	설치위치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금	납부일정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2.02.23.	잔 금(80%) 입주시
64A,B,C	선택 1	2대 (거실+안방)	2,909,091	290,909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선택 2	4대 (거실+안방+침실1,2)	4,818,182	481,818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84A,A1,B,C	선택 1	2대 (거실+안방)	3,000,000	300,000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선택 2	4대 (거실+안방+침실1,2)	5,090,909	509,091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104A	선택 1	3대 (거실+주방+안방)	4,363,636	436,364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선택 2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2)	5,909,091	590,909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140A	선택 1	3대 (거실+주방+안방)	4,545,455	454,545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선택 2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2+서재)	6,909,091	690,909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140B	선택 1	3대 (거실+주방+안방)	4,545,455	454,545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선택 2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2,3)	6,909,091	690,909	7,600,000	760,000	760,000	6,080,000

■ 모듈형 냉장고

(단위 : 원)

주택형 (㎡)	색상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금	납부일정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2.02.23.	잔 금(80%) 입주시
64, 84 전타입	새틴 베이지 (냉장고, 변온냉장고, 김치냉장고)	4,000,000	400,000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104,140 전타입	새틴 그레이 (냉장고, 변온냉장고, 김치냉장고)	4,000,000	400,000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 엔지니어드스톤

(단위 : 원)

주택형 (㎡)	색 상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금	납부일정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2.02.23.	잔 금(80%) 입주시
64A	나폴리베이지	1,727,273	172,727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64B		1,818,182	181,818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64C		1,545,455	154,545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84A		1,818,182	181,818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84A1		1,818,182	181,818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84B		2,181,818	218,182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84C		2,000,000	200,000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104A	콘트레일	2,000,000	200,000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140A		2,090,909	209,091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140B		2,363,636	236,364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에어컨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
• 상기 옵션선택 품목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및 엔지니어드스톤 공사비는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냉장고(김치냉장고) 옵션비용은 증가비용이 (냉장고장 변경공사 및 주방가구추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옵션 선택품목이 전시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아파트를 명도할 경우 아파트와 함께 설치상태로 인계하여야하며, 추가 설치 품목의 시설비용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존가격을 산정하여 정산처리 하며, 추가 파손/훼손에 의한 수리가 있을 경우 별도로 수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동의한 추가선택 품목외 설치된 시설물 및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기로 합니다.
• 추가설치 품목의 무상서비스기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Ⅵ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1~3개월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4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연체료, 월임대료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등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의 대상이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75퍼센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용검사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 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후 주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ecodesian15.com) 등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 상의 마감재(구조,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의거하여 처벌 받게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해 주택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구획을 지정분할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관리 등 관련업무 일체)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입주전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임대인이 선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집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준공 및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주 후 일부세대에서 도로 및 철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당사 및 전주시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임대보증금 잔금의 납부 및 이사당일 입주예정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차 계약 내용과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금 중 2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당해 주택에 대한 보수수선 등은 장기수선계획의 수선 주기가 도래 한 항목 내 공종에 한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우선 보수수선하고 이에 임차인은 동의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을 위한 재능기부 및 주거서비스의 제공시기, 종류, 내용, 비용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서비스이용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일부 주거서비스의 경우, 단지내 공용부분이 사용될 수 있고,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등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및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퇴거시 임대주택의 원상복구 완료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환불시 추후 발생되는 수선비용 등을 감안하여 임대인이 개략적으로 산정한 수선비용을 유보금으로 공제한 후 지급되며, 유보금의 환불은 퇴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비용, 청소 및 사용료, 원상복구를 위한 직간접 비용등을 최종 정산한 후 반환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계약해지(퇴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퇴거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본 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중도해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계약해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또는 잔여임대차기간의 총 임대료 및 관리비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계약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계약해지예정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단, 후속 임차인이 계약해지 예정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전날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에게 그가 지정하는 양식으로 작성된 보증금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보증금반환신청일로부터 3개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공실관리비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반환신청서에 기입한 퇴거예정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임차인이 사망 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파산 등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임차인 또는 그 상속인 및 대리인은 사망일 또는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임대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정식 임차인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 모임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추후 공실이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당첨자는 입주자 자격 확인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주택의 공실이 1호 또는 1세대일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으로 입주하며, 예비당첨자는 해당 호실의 기존 계약조건을 포괄 승계(추가선택품목 등)받는 조건으로 입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입주할 수 없으며 예비당첨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차순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공실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이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공실 발생으로 임차인 변경시 신규 임차인의 임대조건은 현 계약시점까지의 누적인상률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품목은 하자보수기간 이후부터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이 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이후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분양전환을 진행할 시 분양전환 예정일 현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며, 분양가는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감정평가 금액내에서 입주자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단, 관계법령상 임대기간 및 분양전환, 분양금액 등에 대한 법령이 재개정될시 해당법령을 따르기로 합니다.)

■ 설계·시공 상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홍보관,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단종),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도로 등은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주변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보강토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의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및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 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주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인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 에코시티 사업지 인근에 도로 및 전라선 철도, ㅇㅇㅇ기무부대, 송천정보통신학교(구)전주 소년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각 타입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대지 중 일부가 공공보행 통로로 사용됩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5항에 의거하여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전 입주민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항시설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단지

1)공통사항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단지는 근린공원 등이 인접하여 공원 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에는 과학로가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예비 소음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작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 DA등)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택 홍보관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등,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등, 벤틸레이터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은 공부 정리절차(준공 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 및 하자예방을 위하여 건물외관(외부색채, 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경관조명,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모집 공고 모형 및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전주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아파트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에코시티 교통영향분석 종합개선안에 따라 단지 진출입이 일반적으로 교통체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는 단지 남측 및 동측에 위치하여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측 출입구와 인접하여 단지내 상가 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출입구가 설치됩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연결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와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실외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장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석축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문주는 남측 출입구(1개소)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외벽마감은 석재/뿜칠/벽돌이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동이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하여야 하며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주택홍보관에서 확인바랍니다.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해당시설의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 공간 등은 실제 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제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및 각종 시설물, 미술장식품,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단지주거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설비의 설치 위치 및 개소, 설치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옥상,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중계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7조 등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에 의거,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의 이동통신 설비 설계를 통해 1501동,1505동 옥상층 및 지하1층 팬룸#1, 팬룸#6 인근에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1501동,1505동 2개동 옥상부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인접세대는 이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인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인이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하자보수를 위한 AS센터는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실에 운영이 되며, 내부실의 사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2)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265대, 근린생활시설 10대, 총 1,275대(일반주차, 확장형 주차, 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7개소(급속 1, 완속 6)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공사 중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 ~ 지하1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전 동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나 도로에서 진입하는 출입구는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 진출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1톤) 택배차량을 제외한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 2층 주차장 진출입 및 내부통행로 높이는 2.3m로 설계되었으며 이외구간(차량주차구간 등)은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환기구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천장 상부에 환기팬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추후 근린생활과 인접한 동에서는 근린생활 주차공간에 대해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의 지하1층 바닥부분은 방수구간이지만, 목설 등으로 차량과 함께 많은 눈이 유입될 경우 지하2층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목설 등의 기후와 관련되어 차량 및 눈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임대관리사무실 및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임대인이 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목적 실내체육관,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은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제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상부 옥상층에는 옥상조경이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공간과 인접한 세대에서는 해당구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임대인이 제공하며, 제공 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각종 홍보물상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배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추후 근린생활과 인접한 동에서는 근린생활 주차공간에 대해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은 해당시설 입점재(입실자)가 관리합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제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공용홀
• 단지내 차량(오토바이 등)통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1층에 설치되었던 우편물 수취함을 지하1층 공용홀에 변경 배치하였으며, 이로인해 지상1층 공용홀 사이즈가 다소 협소해보일수 있으나, 임차인은 이를 인지한 후 계약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동별 우편물 수취함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하니 필히 계약 전 확인해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6)어린이집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전주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학교

개발지구 인근학교 학생배치여건, 학생유입 규모, 공동주택 분양(임대) 공고 상황,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심사결과 등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변경되거나 설립되지 못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설립 이전까지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학생배치가 가능한 초등학교에 배치(1.5km 이상 배치가능)
※ 제3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현재 에코시티 내 학생이 급증하고 있어 15블럭 유입 학생은 인근학교 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은 입주 시 인근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학생배치 여건 등에 따라 배치 대상 학교 등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학교가 신설되기 전에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인근 초등학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단위세대

1)공통사항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현관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은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 면적의 차이는 임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세대 천장고 높이는 2,600mm이며, 1층을 제외한 모든층의 천장고 높이는 2,300mm입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장, 신발장, 욕실거울, 욕조)의 후면 또는 측면, 바닥면, 천정과 접하는 비노출면과 거울 후면을 포함한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도배, 타일, 마루)을 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로 마감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 시스템온수분배기 급기유니트, 디퓨저의 설치위치 및 사양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 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강마루 바닥재는 동급 이상의 제조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우드 패턴 및 색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변형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디자인 크기,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PVC 또는 PP 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 시 문틀은 목문틀 위 시트마감으로 시공되며, 도어는 ABS계통 도어로 시공됩니다.
• 세대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을 적용하되 덕트와 연결되는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가스배관 시공으로 주방가구 상부장 내부 수납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에는 음식물 탈수기, 난방용 온수분배기 등이 들어가 공간이 협소합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정에는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하며, 하향식 피난구를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는 배관 또는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기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설치 장소는 도어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세탁기는 반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64B타입은 다용도실 천정의 층고가 다른 타입에 비해 낮게 설치됩니다.

2)창호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니, 본 공사 시 아파트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발코니확장
• 당해 공동주택은 전체 발코니 확장(안방발코니 제외)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하여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새시는 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高에 의한 바람의 영향치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실 시공 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성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새시 설치비용은 금회 공급세대인 748세대 전세대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시공하여 제공하며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구현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직접 확장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규상 실내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확장공사 레벨, 램프와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새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급·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실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4. 홍보물 관련(사이버모델하우스, 홈페이지, 인쇄물 등)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수 있습니다.
• 홍보물 내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미구현세대의 경우 주택홍보관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공기관 등이 설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주택홍보관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타입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임대 안내책자를 통해 계약전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시 견본주택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샘플하우스를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내 주택타입별 천정고는 2.3m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변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한 후 보관할 예정입니다.

5. 계약관련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주택임대관리업체, 교육청, 인허가청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친환경 주택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 임대인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임 대 인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	729-88-001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천마산로 32 영준빌딩 4층 (송천동 1가)
시 공 사	주식회사 태 영 건 설	105-81-7454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 (장항동)
	주식회사 성 진 건 설	418-81-0580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196-61(삼천동3가)
	주식회사 부 강 건 설	402-81-166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쳄잠로 559 (효자동3가)

■ 견본주택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336-2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ecodesian15.com
■ 문의 : 견본주택 ☎ 063)255-8383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